

5. 見本住宅의 建設 및 管理制度 改善指針

建設部 1990. 10. 15.

1. 주택사업자가 판촉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견본주택은 주축 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그 설치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, 업체가 견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 호화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분양되지 않는 고급가구 또는 기구 등을 진열하여 과대선전하므로서 수요자를 혼란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83. 2. 3 “견본주택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”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,
 2. 근간 수도권 등 도시지역내의 견본주택용지의 확보가 어렵고 주택분양완료후 장기간 존치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견본주택의 건설 및 관리제도를 개선하였으니 귀회원사에게 주지시켜 견본주택 철거후 주택청약자와의 분쟁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음

- 가.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분양 완료시까지로 단축하되, 철거후 주택청약자와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개책자(팜프렛)에 주택설계, 공급대상항목, 사용자재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도록 함.

나. 견본주택은 당해업체의 대표적인 평형만 건설하고 기타 평형은 도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.

견본주택(모델하우스)의 건설 및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지침

1. 목 적

사업자가 주택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분양전에 건설하는 견본주택을 주택의 완공 후 실제 입주하게 될 주택의 구조나 규모 및 자재의 품질 등과 동일하게 전립될 수 있도록 하여 하여 사업주체의 과대선전 및 과소비 풍조를 없애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므로서 분양질서의 확립과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함에 있음.

2. 존치기간 및 존치기간 경과후 조치

견본주택 존치기간은 분양완료시까지로 하며 철거후 주택청약자와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개책자(팜프렛)에 주택설계, 공급대상항목, 사용자재 등을 상세하게 명시도록 함.

3. 자 재

가. 사용자재는 KS품으로 하되 실제분양 주택과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

다만,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준공 검사권자에게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.

나. 주요자재의 품질보증서를 게시할 것

- 품질보증서에는 납품자재의 품질에 대한 보증기간을 명시하고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자재교환조건 및 이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불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.

4. 규모 및 시공

가. 견본주택은 실제 건축할 아파트의 설계도서와 동일한 규모(면적, 치수 등)로 설치하여야 하며 동일단지에 다수의 평형일 때에는 대표적 평형만 설치하고 기타 평형은 모형도 또는 도면으로 대체함.

나. 실제 아파트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품질 및 제조원은 견본주택에 사용한 재료와 동일한 것으로 시공하여야 함.

다. 홀에는 분수대, 주택모형 등과 필요 이상의 고급조명 등의 설치를 금함.

라. 홀의 면적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견본주택의 배치 등을 경제적 규모로 설치하여야 함.

5. 외부모형 및 도장

가. 외부도장은 원색 또는 자극적인 색상을 피하고 화분 및 화환의 진열을 금함.

나. 견본주택의 외부모형은 가급적 최소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함.

6. 마감재료

가. 건 축

(1) 바닥, 벽 및 천정에 사용하는 각종 마감재료의 종류, 제조원, 품질을 명기하여 전시하여야 함.

(2) 창호자재의 종류 및 제조원, 품질, 두께, 도색의 마감, 시공방법을 명기하여 전시하여야 함.

나. 전 기

(1) 실내에 노출되는 전기자재의 종류, 제조원, 품질을 그 자재의 위치별로 명기하여 전시하여야 함.

다. 위생난방

(1) 실내에 노출되는 위생 및 난방기자재의 종류, 제조원, 품질을 그 자재의 위치별로 명기하여 전시하여야 함.

라. 가재도구

(1) 실내에 비치하는 가재도구는 분양하는 것만 비치하되, 자재의 종류 및 제조원, 품질, 마감처리방법을 표기하여 전시하여야 함.

(2) 분양하지 않는 가재도구는 일체 비치할 수 없음.

마. 실내장식

(1) 실제 분양하는 원형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분양하지 않는 가전제품과 실내 커튼 및 가구 등의 진열은 일체 금함.

7. 자재표기명세서 규격 및 양식

가. 건축·전기·위생·난방: 100mm × 120mm

명 칭 :	
규 격	
자재의 종류	
품 질 (등 급)	
제 조 원	
하자보증기간	
마 감 처 리	

나. 가재도구: 100mm×150mm

명 칭 :	
규 격	
가 격	
품 질 (등급)	
제 조 원	
하자보증기간	
마 감 처 리	

8. 일반사항

가. 사업주체는 허가도서에 명시된 실내 자료 마감표, 구매계약에 의한 자재명 세서, 견본주택 각실내부(바닥, 벽, 천정)의 천연색 사진을 준공 전에 준공검사권자에게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, 동 부분을 주택의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비치하고, 입주자 또는 관계기관의 요

구가 있을 때는 즉시 열람토록 하여야 함.

나. 표시하는 장소가 시작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편리한 장소에 표기하여 전시하게 할 수 있음.

다. 부착방법은 장소의 형편에 따라 적합하게 부착함.

9. 감 독

가. 준공검사권자는 “동지침” 위반시에는 위반사항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사업주체에 위반사항을 개선지시하여 시정토록 함

나. 위반사항의 개선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토록 함